



정책건의

매몰 LPG저장탱크 재검사방법 개선건의

■ 한국LPG가스공업협회

최근 우리회는 현행 매몰저장탱크의 재검사 방법이 현실과는 다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해줄 것을 지난해에 이어 산업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에 제자 건의했다.

지하저장탱크 검사시 나타난 문제점

- 탱크박스 벽체와 탱크사이의 간격이 좁아 검사를 위한 장비 및 인력투입이 곤란하므로 검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검사후 복구작업도 힘든 상황임
- 모래제거가 어렵고, 공간없이 완전히 다시 채우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또한, 장소가 협소하여 모래를 제거한후 보관할 장소가 없으며, 모래제거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젖은 모래를 다시 채울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건사를 채우도록 돼있는 법규를 위반하게 됨
- 피복제거가 힘들고 재코팅이 곤란함
 - 매물저장탱크 재검사시 탱크 외면의 코팅을 벗겨내야 하는데, 어느 부분을 벗겨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탱크 전체의 코팅을 벗긴 다음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 작업공간이 협소해 검사후 재코팅 작업이 이뤄지기 힘듬
 - 피복제거시 고압의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탱크외부에 손상을 주게 됨
- 객관적 검사방법과 절차가 없어 검사업체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실시되고 있음
- 시공절차가 복잡하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됨
 - 4천만원 이상 소요
- 검사에 장기간 소요 : 탱크 1기당 20여일 정도 걸림
- 외관검사시 막대한 비용(4천만원)을 투자하고 안전성을 확인한 상태에서도 매 5년마다 외부검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영업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임
- 외관검사결과 노후 탱크일 경우 탱크를 교체해야 하나 안전거리 등 현행 법규 적용 때문에 설비의 변경(용량 증설 등)이 어려운 실정임

개선방안 건의사항

- 15년 이상된 모든 저장탱크를 대상으로 정밀 안전검사를 실시한 다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탱크에 한해 동 고시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
- 모든 신규 및 기존 탱크는 탱크와 탱크박스 상판 연결부분에 점검구(Inspection hole)를 만들어 수시로 탱크의 부식상태를 점검·예측하여 문제발생시 정밀 안전점검 실시
- 방식조치(외부전원법, 희생양극법 등)가 되어있는 경우 부식방지조치가 충분히 고려된 점을 감안, 외관 검사대상에서 제외
- 외관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주기를 기존 탱크와 같이 5년마다 내부검사만 하도록 검사주기 개정
- 기존 총전소의 설비변경(외관검사시 노후탱크 교체 등)시 안전성이 향상되는 경우 종전 규정(99.4.1전) 적용